

**2023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

**2022. 12. 29.**



# 목 차

I. 사업개요	1
II. 2023년도 신규지원 계획	4
III.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	7
IV. 신청요건 및 방법	16
V.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25
VI. 향후 연구사업 관리	28
[붙임 1]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33
[붙임 2]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심의 의무화	34
[붙임 3]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36
[붙임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39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과제 공고안내

## I . 사업개요

---

# 1

##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개요

### 1. 연구사업 목적

- 공익적 가치 중심의 임상연구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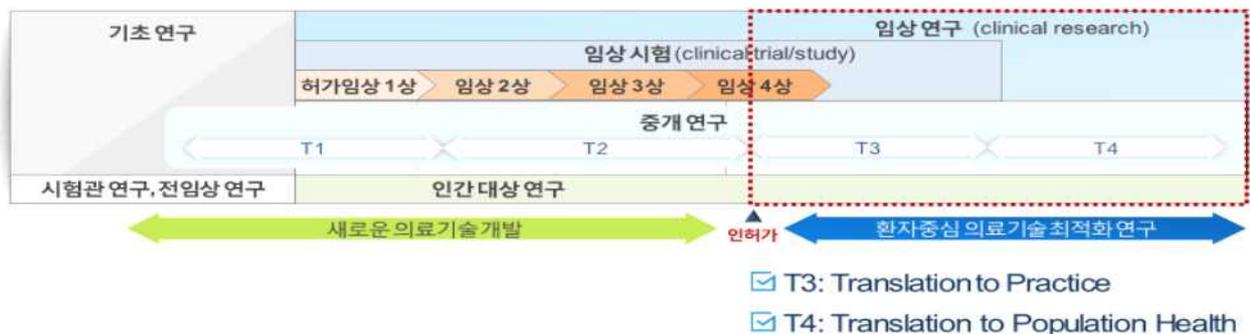
### 2. 연구사업 특성

- 인·허가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전달체계 등 의료기술의 효과성·안전성·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는 국가 지원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공익적 임상연구\*)
  - (환자중심) 환자에게 유용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의 전 단계에서 환자의 요구와 관점 및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
  - (의료기술)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 건강과 생명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기술
  - (최적화) 다양한 의료기술 중 환자에게 임상적 차원, 환자 건강의 질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 최적의 보건의료성과를 낼 수 있는 의료기술을 규명하고 제공하는 과정

\* 공익적 임상연구: 보건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실제적 효과, 장기 안전성 등 환자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 관점에서 환자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임상적·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생산하는 실용연구

### 3. 연구사업 지원 범위

- 허가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중개연구 분류 T3 및 T4)



### 3. 연구사업 전략체계

<b>비전</b>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b>목표</b>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 최적화			
<b>전략방향</b>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를 통한 최적화	임상근거 확보를 통한 의료기술 과학화	연구 수행 및 확산체계 효율화	
<b>세부사업</b>	<b>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b>		<b>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b>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환별 진단/치료기술 비교평가연구</li> <li>○ 질환별 예방/관리기술 비교평가연구</li> <li>○ 의료취약계층 건강성과 비교평가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기술 적용 치료법 근거생성연구</li> <li>○ 의료기술 응용·변경요법 근거생성연구</li> <li>○ 미확립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li> </ul>	
<b>추진전략</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환자중심성 강화</b>  <small>(Patient-centeredness)</smal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보건의료현장 근거 생산</b>  <small>(Real-World Evidence)</smal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보건의료정책과 연계</b>  <small>(Health policy linkage)</smal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자료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b>  <small>(Data platform)</small> </div>

### 4. 연구사업 구조

세부사업	①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②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b>사업내용</b>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비교평가연구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b>세부과제 분류</b>	<b>①-1 질환별 진단/치료기술 비교평가연구</b>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의료기술별 환자성과 비교연구	<b>②-1 첨단기술 적용 치료법 근거생성연구</b> 혁신적·고비용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환자성과 및 재정영향 변동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b>①-2 질환별 예방/관리기술 비교평가연구</b> 생애주기별 질환 예방/관리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성과 비교연구	<b>②-2 의료기술 응용·변경요법 근거생성연구</b> 의학적 필요도가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이 제한된 허가범위 외 사용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b>①-3 의료취약계층 건강성과 비교평가연구</b> 의료적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간 효과 비교 및 성과평가 연구	<b>②-3 미확립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b>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의 근거산출연구
<b>세부과제 유형</b>	▷ <b>전향연구</b> (다기관·다학제 구성) -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CT)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특성에 따라 실용임상시험(PCT), 또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가능 -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의 경우, 위의 전향적 연구설계를 반드시 포함하되 필요 시 질적·양적 연구방법론 추가 가능 ▷ <b>후향연구</b> - 다양한 후향적 자료 및 2차 자료원을 활용한 성과연구 - 소규모 전향연구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과제 공고안내

## Ⅱ. 2023년도 신규지원 계획

---

# 1

##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지원 개요

### 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 공고단위(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사업별 제안요청서(RFP)’ 확인 요망

※ 선정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단위 (RFP명)	자유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 대상	과제 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 수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자유공모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이내)	연구개시일(23.4월 예정) ~ 2024.12.31. (1차년도는 9개월 이내)	학.연. 병	해당 RFP 참조	9개 내외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자유공모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이내)	연구개시일(23.4월 예정) ~ 2024.12.31. (1차년도는 9개월 이내)	학.연. 병	해당 RFP 참조	6개 내외

### 2. 공고단위(RFP명)별 연구 지원기간

※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단위	단계 구분	연구기간(총 2년 이내)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단계없음	1차년도 연구기간: 연구개시일 ~ 2023. 12. 31. 2차년도 연구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단계없음	1차년도 연구기간: 연구개시일 ~ 2023. 12. 31. 2차년도 연구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 3. 추진일정

○ 2023. 1월 말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18시까지)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18시까지)
○ 2023. 2월 초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평가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 2023. 2월 중 ~ 3월 중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서면평가 진행
○ 2023. 3월 말	발표대상과제 공지 및 발표평가 진행
○ 2023. 4월 중	예비선정 공고
○ 2023. 4월 말	연구개시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공고단위(RFP)별 신청 마감시간(18:00:00) 엄수(마감시간 이후 신청 불가)
- ※ 공고단위(RFP)별 경쟁률 및 구두평가 일정 등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를 확인 요망
-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제 신청 전 숙지사항>

- 연구자는 ‘제안요청서(RFP)’와 ‘공고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RFP별 지원자격, 연구비 규모 및 기간, 지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시간 이후 지원 분야, 연구계획서 본문 등의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주관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점검하며 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 ※ 연구책임자는 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 유사과제 검색: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 검토

환지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과제 공고안내

### Ⅲ.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

---

# 1

##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제안요청서명 (세부사업명)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보안과제 여부 (보안등급)	일반
공모유형	품목지정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	X
RFP 특이 가점	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X	데이터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 (CODA 등록)	X
과제명	※ '해당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협약형태	선정예정 과제 수	
	연구개시일('23.4월 예정) ~ 2024.12.31. (1차년도는 9개월 이내)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이내)	다년도	9개 내외	
※ 연차별 연구기간 및 지원연구비는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p.5) 참조 ※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과제별 연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 가능					
<b>□ 지원목적</b> ○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진단·치료·재활 관련 의료기술(의료서비스 및 전달체계 포함)의 임상적 효과성,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생산하여 임상현장 및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 연령·계층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및 관리 기술에 대한 효과를 비교·평가하여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체계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형평성 제고 전략 간 비교를 통해,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환경 개선 및 정책적 반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b>□ 연구목표</b> <b>1. 최소 요구성과</b> <b>(1) 학술논문(성과 달성시점은 연구종료 후 1년 이내)</b>					
최소요구성과		성과 인정 기준			
국내외 SCI	1건	- 연구책임자(주관 또는 공동)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in press 포함) - 논문성과에 해당사업의 사사(과제번호 포함)를 표기하여야 하며, 중복 사사된 논문에 대해서는 표기한 사사의 수(n)로 나눈 값(1/n)을 반영함 - 논문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야 하며,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 JCR 분야별 상위 30% 이내 저널에 게재 신청된 실적만 인정 - Review(종설) 논문은 성과 인정에서 제외			
※ VI. 향후 연구사업 관리의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참고					
<b>2. (권장) 고유성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성과지표(1건 이상)</b> (예시 1) 연구결과의 임상적·정책적 의사결정 근거활용을 위한 간담회, 원탁회의, 공청회 개최 등 (예시 2) 환자·국민의 연구 참여: 연구의 계획 수립, 수행 등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환자·국민이 조언, 자문하는 역할로 참여하거나, 환자에게 중요한 임상적 결과(outcomes)가 연구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환자 참여에 대한 개념 및 방법은 영국 INVOLVE 웹사이트( <a href="https://www.invo.org.uk/">https://www.invo.org.uk/</a> ) 참조					

□ 지원분야 및 내용

1. 연구사업 세부과제별 연구지원 내용

○ 아래의 연구지원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의 제목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함

연번	세부과제	주제영역 (연구목적)	내용	선정예정 과제 수
1	질환별 진단/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진단·치료법 의 표준화, 최적화	<p>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를 통해 최적의 진단·치료법을 규명하여 표준 치료법을 확립하고 최적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술의 장기결과(long-term outcomes) 평가를 권장</li> </ul> <p>&lt;후향적 임상연구 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기관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한 대퇴슬와동맥 협착병변의 치료에 사용되는 중재시술 의료기기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비교평가</li> <li>· 비만을 동반한 2형 당뇨 환자에서 비만대사수술의 비교평가연구</li> <li>· 암의 뼈 전이 영상 진단 검사 비교평가연구</li> </ul>	3개 내외
2	질환별 예방/관리기술 비교평가연구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p>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환자 통합관리 및 연속적 돌봄을 위한 서비스 모델·전달체계를 기존 서비스와 비교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지표를 이차자료원에서 조작적 정의하는 후향적 코호트연구, 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후 소규모 전향연구를 통해 적용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가능</li> </ul> <p>&lt;후향적 임상연구 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차의료 지속성과 포괄성이 복합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미치는 효과평가 연구</li> <li>·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li> </ul>	3개 내외
3	의료취약계층 건강성과 비교평가연구	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p>의료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술 적용에 있어 대안적 접근을 취하고 표준적 접근과 비교평가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대상 예시) 노인, 소아청소년, 산모·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지역간 의료불평등 등</li> </ul> <p>&lt;후향적 임상연구 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산모 관리 모델 개발</li> <li>· 북한이탈주민 건강부담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 중재 모델 개발 - 생활습관병을 중심으로</li> </ul>	3개 내외

○ 아래와 같이 기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성과연구 또는 소규모 전향연구를 지원함

(1) 등록자료, 코호트자료, 이차자료원(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기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성과연구(outcomes research)

- 의료기관 환자의무기록자료, 등록자료, 연구목적별로 개별 추출된 단일기관(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청 등)의 이차자료\* 및 이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

\* 이차자료는 연구자 신청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서 심의를 통해 제공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한정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자료간 통합 지원 가능

-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를 활용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근거합성연구\* 및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등의 다양한 양적·질적 조사연구가 연구의 일부로서 포함 가능

\* 기존 일차연구 결과를 합성하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 및 메타분석(meta-analysis)

## (2) 소규모 전향연구

- 소규모 전향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대상자 등록 및 데이터 수집 계획, 연구대상자 방문일정표, 데이터 통계분석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증례조사지 첨부**: 연구계획서에 증례조사지(Case Report Form, CRF)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를 추가확대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에 증례조사지와 기존 자료 구축 시 프로토콜을 첨부하여야 함

· 기존 구축된 자료와 연계하여 연구할 경우, 기구축된 자료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에 대해 명시하여야 함

※ 증례조사지(paper CRF)는 연구에서 사용할 항목을 자세히 기술하여 작성하되, 과제 선정 후 사업단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 연구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기재

○ 연구계획서에는 공익을 추구하는 목표에 합당하는 **연구의 필요성, 구체적인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수행가능한(feasible) 연구설계와 데이터 구축 및 통계분석계획, 연구결과의 임상적 또는 정책적 활용도, 연구인력의 구성**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나 기존 근거(evidence)에 대하여 가능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ic review)**' 결과를 인용하여 기술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안하는 해당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질문 및 가설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계분석계획**에는 활용 자료원 및 확보 방안, 두 개 이상의 자료 연계 여부, 연구대상자 표본수(sample size) 산정 근거, 주요 결과지표, 공변량 및 통계적 분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지원대상

○ IV. 신청요건 및 방법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고

### □ 특기사항

#### 1. 연구지원범위

○ 허가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 식약처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단계,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 또는 검증(validation) 하기 위한 연구는 지원대상이 아님

○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을 표준화된 중재를 전달하는 수단 또는 매체로서 이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함(의료기기)

- 국내외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스토어(App store, Play store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앱을 이용할 수 있음

※ 해당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참여했거나, 제조회사와 직·간접적인 관계자는 연구참여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C.O.I.) 확인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산품 또는 상용화된 앱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에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과제에서 중재전달, 자료수집 등을 위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음. 다만,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연구종료 후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단의 소유로 함

**2. 임상연구 공통사항**

- 과제가 **최종 선정된 후**,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결과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단으로 제출해야 함
  - 수정계획서 제출 시, IRB 승인·심의 면제 또는 신청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과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IRB 승인서 제출)

**□ 평가 관련 사항**

- 일반적인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을 따름
- 선정평가
  - 연구책임자 1인이 복수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할 수 없음
  - 지원 과제 수에 따라 세부분야로 구분하거나 유사분야와 통합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연구수행
  - 과제 선정 이후 실시하는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구두 발표)에 연구책임자는 성실히 임해야 함
  - 연구기간 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종료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 연구결과의 논문 게재 기간을 고려하여 과제 종료 이후 1년의 성과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평가를 진행함
  - ※ 단, 최종보고서는 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선정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서면·발표평가	1. 연구의 중요성(10)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0)
	2. 연구계획의 우수성(45)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 ○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20) ○ 연구결과 지표의 타당성(15)
	3. 연구자의 우수성(35)	○ 연구책임자의 연구경험 및 연구실적(20) ○ 참여연구진의 과제수행 능력 및 역할 분담(15)
	4. 활용 및 기대효과(10)	○ 기대효과의 우수성(1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2

#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제안요청서명 (세부사업명)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보안과제 여부 (보안등급)	일반
공모유형	품목지정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	X
RFP 특이 가점	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X	데이터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 (CODA 등록)	X
과제명	※ '해당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협약형태	선정예정 과제 수	
	연구개시일('23.4월 예정) ~ 2024.12.31. (1차년도는 9개월 이내)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이내)	다년도	6개 내외	
※ 연차별 연구기간 및 지원연구비는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p.5) 참조 ※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과제별 연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 가능					

### □ 지원목적

- 보건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도나 사회적 관심·요구도가 높으나, 충분한 임상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 등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생산하고자 함
-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임상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근거부족 의료기술의 사용 적정화를 유도하고자 함

### □ 연구목표

#### 1. 최소 요구성과

(1) 학술논문(성과 달성시점은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최소요구성과		성과 인정 기준
국내외 SCI	1건	- 연구책임자(주관 또는 공동)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in press 포함) - 논문성과에 해당사업의 사사(과제번호 포함)를 표기하여야 하며, 중복 사사된 논문에 대해서는 표기한 사사의 수(n)로 나눈 값(1/n)을 반영함 - 논문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야 하며,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 JCR 분야별 상위 30% 이내 저널에 게재 신청된 실적만 인정 - Review(종설) 논문은 성과 인정에서 제외

※ VI. 향후 연구사업 관리의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참고

#### 2. (권장) 고유성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성과지표(1건 이상)

- (예시 1) 연구결과의 임상적·정책적 의사결정 근거활용을 위한 간담회, 원탁회의, 공청회 개최 등  
 (예시 2) 환자·국민의 연구 참여: 연구의 계획 수립, 수행 등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환자·국민이  
 조언, 자문하는 역할로 참여하거나, 환자에게 중요한 임상적 결과(outcomes)가 연구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환자참여에 대한 개념 및 방법은 영국 INVOLVE 웹사이트(<https://www.invo.org.uk/>) 참조

□ 지원분야 및 내용

1. 연구사업 세부과제별 연구지원 내용

○ 아래의 연구지원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의 제목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함

연번	세부과제	주제영역 (연구목적)	내용	선정예정 과제 수
1	첨단기술 적용 치료법 근거생성연구	새로 도입되는 의료기술의 최적사용 도모	진단·치료를 위해 보건의료현장에 새로 도입된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생성함 ※ 식약처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단계의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검증(validation)하는 목적의 연구는 해당하지 않음 <후향적 임상연구 예시>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주요 암 진단과 치료에 미친 영향 분석 ·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서 하지 재활 로봇치료의 효과평가 연구	2개 내외
2	의료기술 응용·변경요법 근거생성연구	(장기)유지 치료 및 추적관찰 최적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유지치료 및 추적관찰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효과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고 지침을 확립함 - 장기적으로 행해지는 유지치료 및 추적관찰에 있어 방법, 빈도, 주기, 용법·용량 등을 최적화함 - 부작용 위험이 있거나 환자에게 불편 및 비용부담을 주는 치료·추적관찰법의 감량·중단에 대한 근거생성 연구 포함 <후향적 임상연구 예시> · 초기 유방암 환자에서 추적관찰검사법의 최적화 연구 · 양성자펄스역제제 장기사용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동 데이터모델과 공공의료 빅데이터 비교 분석 ·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 저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근거생성 연구	3개 내외
3	미확립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미확립 의료기술 검증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생성함 ※ 식약처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단계의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검증(validation)하는 목적의 연구는 해당하지 않음 <후향적 임상연구 예시> · 노안교정 목적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용성 및 비용효과 분석 ·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 · 한국인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최적의 LDL-cholesterol 목표치 설정 연구	1개 내외

○ 아래와 같이 기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성과연구 또는 소규모 전향연구를 지원함

(1) 등록자료, 코호트자료, 이차자료원(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기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성과연구(outcomes research)

- 의료기관 환자의무기록자료, 등록자료, 연구목적별로 개별 추출된 단일기관(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청 등)의 이차자료\* 및 이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

\* 이차자료는 연구자 신청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서 심의를 통해 제공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한정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자료간 통합 지원 가능

-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를 활용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근거합성연구\* 및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등의 다양한 양적·질적 조사연구가 연구의 일부로서 포함 가능

\* 기존 일차연구 결과를 합성하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및 메타분석(meta-analysis)

## (2) 소규모 전향연구

- 소규모 전향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대상자 등록 및 데이터 수집 계획, 연구대상자 방문일정표, 데이터 통계분석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증례조사지 첨부**: 연구계획서에 증례조사지(Case Report Form, CRF)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를 추가확대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에 증례조사지와 기존 자료 구축 시 프로토콜을 첨부하여야 함

· 기존 구축된 자료와 연계하여 연구할 경우, 기 구축된 자료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에 대해 명시하여야 함

※ 증례조사지(paper CRF)는 연구에서 사용할 항목을 자세히 기술하여 작성하되, 과제 선정 후 사업단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 연구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기재

○ 연구계획서에는 공익을 추구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연구의 필요성, 구체적인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수행가능한(feasible) 연구설계와 데이터 구축 및 통계분석계획, 연구결과의 임상적 또는 정책적 활용도, 연구인력의 구성**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나 기존 근거(evidence)에 대하여 가능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ic review)**' 결과를 인용하여 기술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안하는 해당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질문 및 가설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계분석계획**에는 활용 자료원 및 확보 방안, 두 개 이상의 자료 연계 여부, 연구대상자 표본수(sample size) 산정 근거, 주요 결과지표, 공변량 및 통계적 분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지원대상

○ IV. 신청요건 및 방법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고

## □ 특기사항

### 1. 연구지원범위

○ 허가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 식약처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단계,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 또는 검증(validation) 하기 위한 연구는 지원대상이 아님

○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을 표준화된 중재를 전달하는 수단 또는 매체로서 이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함(의료기기)

- 국내외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스토어(App store, Play store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앱을 이용할 수 있음

※ 해당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참여했거나, 제조회사와 직·간접적인 관계자는 연구참여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C.O.I.) 확인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산품 또는 상용화된 앱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에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과제에서 중재전달, 자료수집 등을 위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음. 다만,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연구종료 후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단의 소유로 함

**2. 임상연구 공통사항**

- 과제가 최종 선정된 후,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결과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단으로 제출해야 함
  - 수정계획서 제출 시, IRB 승인·심의 면제 또는 신청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과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IRB 승인서 제출)

**□ 평가 관련 사항**

- 일반적인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을 따름
- 선정평가
  - 연구책임자 1인이 복수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할 수 없음
  - 지원 과제 수에 따라 세부분야로 구분하거나 유사분야와 통합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연구수행
  - 과제 선정 이후 실시하는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구두 발표)에 연구책임자는 성실히 임해야 함
  - 연구기간 내 자료 수집과 분석을 종료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 연구결과의 논문 게재 기간을 고려하여 과제 종료 이후 1년의 성과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평가를 진행함
  - ※ 단, 최종보고서는 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선정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서면·발표평가	1. 연구의 중요성(10)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0)
	2. 연구계획의 우수성(45)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 ○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20) ○ 연구결과 지표의 타당성(15)
	3. 연구자의 우수성(35)	○ 연구책임자의 연구경험 및 연구실적(20) ○ 참여연구진의 과제수행 능력 및 역할 분담(15)
	4. 활용 및 기대효과(10)	○ 기대효과의 우수성(1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과제 공고안내

## IV. 신청요건 및 방법

---

##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주관/공동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공고계획(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 전 반드시 사전문의 바람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요망

### □ 과제구성

-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 2. 신청 제한

###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 다음의 경우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① 제안요청서(RFP)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
  - ②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인 경우
  - ③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3. 과제구성 요건

#### □ 연구과제 구성요건

- 각 연구지원 공고계획(RFP)을 참고하여 연구과제를 구성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과제구성>

-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 4. 기타 유의사항

#### □ 중복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확인하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판단함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유사성 검색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 검토)

## □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 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에서 심의(붙임 2. 참조)

##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붙임 3. 참조)

## □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 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붙임 4. 참조)

## □ 임상연구자료 공유

- 관련법령과 향후 사업단이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마련하게 될 임상연구 자료 공유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성과목표 작성 관련
  - 과제 신청 시 성과목표(논문, 임상연구자료 확보, 고유성과)는 최소 요구 성과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과제 선정 이후 연구내용 및 성과목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고단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기존 근거에 대한 현황(체계적 문헌고찰, 임상진료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등)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이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주관·공동 연구책임자 평가위원 등록

-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주관·공동연구책임자는 추후 다른 과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풀에 등록될 예정임

□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용 계획서 제출시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1. 전산입력 안내

## □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과제신청은 주관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후 ‘연구자 권한’ 으로 신청 가능

## ○ 신청절차



## - (1단계) 사전등록 및 업데이트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 (2단계) 전산입력 사항 입력

\* 과제명, 공동과제구성, 요약문, 연구자 인적사항,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연구비 등

## - (3단계)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hwp 파일 업로드

## - (4단계) 연구개발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신청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

※ 기관용 공인인증서는 범용으로 발급 받은 인증서만 사용 가능(은행용 등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는 사용불가)

- 전산입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조(www.htdream.kr→[자료실] →매뉴얼)

## &lt;주의사항&gt;

- 과제신청(전산입력) 시 공동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각 공동과제 신청완료 후 총괄과제에서 “신청완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총괄과제가 신청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제신청 완료가 불가능
- 주관연구책임자가 신청완료(3단계까지) 후에 주관연구기관으로 “확인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과제신청 공문 제출이 되지 않은 신청과제는 접수처리 되지 않음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마감 2일전부터) 전산 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

## 2. 연구개발비 산정

###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1.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 RFP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연구개발비 결정 시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com](http://www.htdream.com)) 공지사항 메뉴 “연구개발과제 위탁정산수수료 안내” 게시물 참조하여 연구활동비에 계상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1. 개정)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
  - 간접비 비율 고시된 비영리기관(대학 등):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 연구기관이 대학일 경우 산학협력단에 간접비 확인 후 작성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병원 등):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공동·위탁 포함)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위탁연구개발비 신설은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후에 신설 가능함
  - 연구수당·간접비 예산이 당초 연구계획에 누락된 경우 신설 및 증액 불가

###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http://www.htdream.kr)) 관련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 서면 및 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공고단위 (RFP명)	연구계획서 본문 양식	연구계획서 본문 (분량제한)	첨부서류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공통 양식	<b>50페이지 이내</b>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중 <u>1. 연구개발의 필요성</u>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RFP별 내용 확인 후 공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공통 양식	<b>50페이지 이내</b>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중 <u>1. 연구개발의 필요성</u>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RFP별 내용 확인 후 공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4. 제출기한

<p>※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 시간(18:00: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p> <p>※ RFP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a href="http://www.htdream.kr">www.htdream.kr</a>)에 공지함</p> <p>※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

공고단위 (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b>2023. 1. 27.(금) 18:00</b>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과제 공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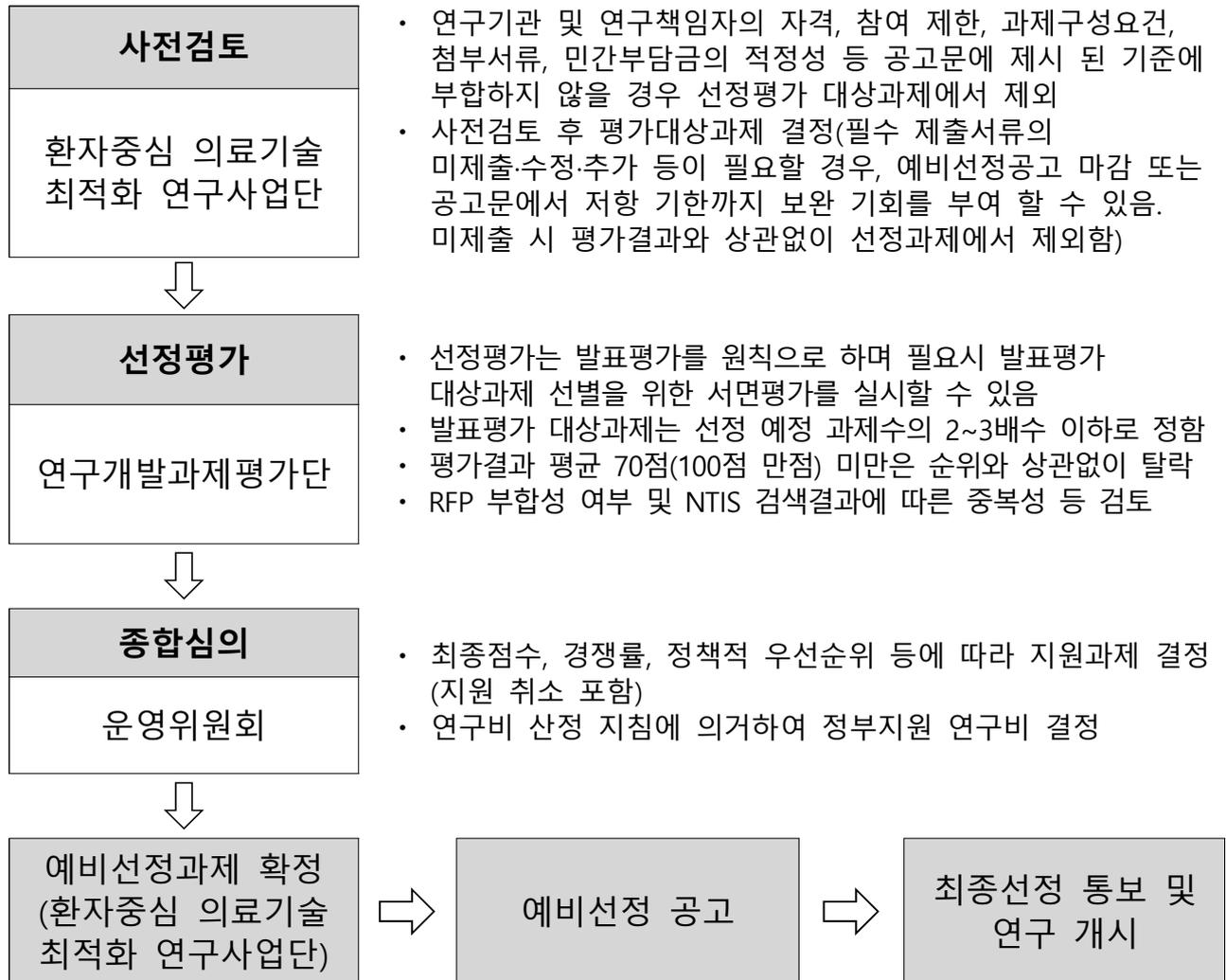
## V.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1

## 선정평가 절차

### 1. 선정평가 절차



※ 예비선정공고 기간 실시내용

- 중복대상으로 이의제기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과제 처리방안에 따라 처리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탈락처리
- 선정 후 현장실사 대상과제는 실사를 통해 구두발표 시 내용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는 탈락처리

## 2

#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1. 평가 방법

- 연구개발과제가 선정예정 과제수의 3배수 이상으로 접수되거나 발표평가에 앞서 선별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서면평가 점수는 최종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공고단위(RFP)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출 방식		
		서면평가 (필요시)	발표평가	최종점수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서면, 구두	A	B	B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서면, 구두	A	B	B

- 서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후 발표평가 대상과제 수는 선정예정 과제수가 1개일 경우 3배수로, 2개 이상일 경우 2배수 이하로 정함. 지원과제가 선정예정 과제 수의 3배 이하일 때에는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과제 평가결과는 정량적 평가결과로 종합평가점수(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을 구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 및 정성적 평가결과, 연구비 조정 등에 관한 종합평가의견을 제시함. 다만,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 지원과제 수가 많아 2개 이상의 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순위를 도출함

\*과제평가단별로 원점수를 평균 100.0점, 표준편차 10.0점으로 하는 분포로 변환한 점수

### 2. 평가 기준

- 주요 평가항목
  - “Ⅲ.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 를 참고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과제 공고안내

## VI. 향후 연구사업 관리

---

## 1. 협약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 이 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동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다만,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 연구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 개별연구인 경우에만 사업단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2. 연차보고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연차평가는 연차보고서 제출로 같음하되, 현황파악을 위해 과제에 따라 연구책임자 구두발표,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방문
  - 사업단은 필요 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3. 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후 60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함.

사업단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미흡한 경우, 행정제재(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 4.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의 제출 시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성과유예 기간)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 즉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산업화, 전시회 참가, 학술발표, 인력배출현황, 기타 성과물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함

##### □ 연구성과 활용현황의 보고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연구성과의 홍보

- 사업단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하여 연구발표회 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홍보 시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사실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한 발표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가점 불인정 등 연구비 지원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협의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논문>

- 국문 표기: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ing Center, PACEN)」 지원을 받았음(과제고유번호: HC23C0000)."
- 영문 표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ing Center (PACEN)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C23C0000)."

\* HC23C0000의 경우 각 과제별 고유번호 기재

○ 연구종료 전·후, 연구성과 발생(논문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에 수시 입력함

※ 과제관리 등 공고안내서와 RFP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고  
(참고 사이트: [www.htdream.kr](http://www.htdream.kr) → 자료실 → 관련법규/메뉴얼)

## 2

## 기타 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의 진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평가는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 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 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적용
- ※ 관련 법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3

## 문의처

담당 내용	연락처
연구내용 (연구개발1팀)	손희정 02-2174-2853 장진영 02-2174-2527
임상연구자료 (연구개발2팀)	이성은 02-2174-2833 채민정 02-2174-2742
연구비 및 평가 관련 (과제평가팀)	김승태 02-2174-2841 조은서 02-2174-2529

##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 참조]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 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 선정 이후 : 차기년도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예산을 심의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의 본심의를 받아야 함(매년 5월경 예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금액변경·구축포기 등) 발생 시 사업단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보고·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ZEUS 연구개발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http://www.zeu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의 발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참조]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전부 개정(2019. 3. 12. 시행)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수행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받아야 함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 수행기관의 IRB 심의 의무화

### □ 생명윤리법 주요내용

- (목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①물리적으로 개입, ②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③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동법 제2조제12호)
    - \*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동법 제2조제11호)
- (IRB 역할 강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IRB 설치·운영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공용IRB) IRB 설치가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근거 마련
- (IRB 심의대상 연구의 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사용하는 연구만 IRB의 심의대상

## □ 준수 사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계획서 제출단계에서 해당 연구기관의 IRB 심사결과(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 제출 필요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
  -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http://irb.or.kr> (irbqna@nibp.kr)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참조)

□ 9대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국가 R&D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 관련법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2019-58호, 2019.7.12.)

○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시,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www.htdream.kr)에 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등록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https://paper.kisti.re.kr)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 (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ripis.or.kr)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https://nrms.kisti.re.kr)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http://www.zeu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장비 중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ntb.kr)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 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 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생명 자원*	생명 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www.biodata.kr)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신물질**	국립농업과학원 (https://genebank.go.kr)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물질에 관한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swbank.kr)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기탁	생명 자원*	생물 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biorp.kribb.re.kr)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http://chembank.org)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 □ 임상연구정보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

- 등록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임상시험)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CRIS) 등록문의: 043-249-3085 / [criskorea@korea.kr](mailto:criskorea@korea.kr)
- 성과보고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가입함에 따라,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 ※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시점 :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
- 등록권한 : 회원가입 후,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
- 임상연구정보 갱신 : 임상연구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매 6개월마다 연구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 □ 논문성과의 등록 및 공개

-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해야 함
  - ※ 관련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2항제4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 중 논문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논문의 공개 및 공유

## 전담기관으로 지정

※ 관련법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2019-58호, 2019.7.12.)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 중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공식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의 최종본 전자파일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제출해야 함

- 연구자는 논문의 최종본 원고 제출 시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하여야 함. 다만, 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 또는 학회 등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논문이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되어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학술지(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홈페이지(library.nih.go.kr → 전자지원 Journal Information)에서 확인 가능

### ※ 출판계약서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체결 시 예시 문구

(출판사명 또는 학회명)는 저자가 게재 확정된 최종 원고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함으로써, 논문의 공식 출판 12개월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보존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Journal) acknowledges that Author retains the right to provide a copy of the final manuscript to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NIH) upon acceptance for Journal publication, for public archiving in KNIH-operating digital repository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12 months after publication by (Journal).)

※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043-249-3000 / yhcho519@korea.kr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0. 25.>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항목	사용용도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항목	사용용도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비 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